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 공 기 관 의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 등을 상향하여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증가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

현재 직원 정원 5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

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
계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50명”을 “30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1,000억원”을 “2,0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		
1. 직원 정원: <u>50명</u> 이상		-----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u>30억원</u> 이상		-----		
3. 자산규모: <u>10억원</u> 이상		-----		
② · ③ (생략)		-----.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1. ----- <u>300명</u> --		
1. 총사업비가 <u>1,000억원</u> 이상일 것		2. -----		
		<u>200억원</u> -----		
		--		
		3. ----- <u>30억원</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		

		-----.		
		1. ----- <u>2,000억원</u> -----		
		--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 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u>50</u> <u>0억원</u> 이상일 것 ② ~ ⑥ (생략)	2. ----- ----- <u>1,0</u> <u>00억원</u>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연 락 처	(044) 215 - 5536